

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100세대 규모이상 단독주택용지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 및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(3%)을 구청장에게 지급		
사업비 (당해년도)	1,315,172천원	(국비)	(사비)1,315,172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주택건축본부	공동주택과	진조평 2133-7130	안남선 2133-7132	서준식 2133-7133

*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0예산액 (A)	2021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797,736	(x-) 1,315,172	(x-) 517,436	(x-) 65
징수교부금	(x-) 797,736	(x-) 1,315,172	(x-) 517,436	(x-) 65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1년 예산내역		
징수교부금	○ 징수교부금	=	1,315,172천원

과목구분	2021년 예산내역
	43,839,060,280원*3%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100세대 규모이상 단독주택용지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 및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(3%)을 구청장에게 지급

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 :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
-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제3조 제2항
- 부과대상 : 100세대 규모 이상의 단독주택용지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개발사업시행자
- 부과기준 : 단독주택용지-분양가의 14/1000, 공동주택-분양가의 8/1000
- 집행방법 : 자치구의 징수실적에 의거 징수교부금(징수금 3%) 지급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19.1월 ~ 2019.12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
- 사업내용 :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3%를 자치구청장에게 교부
- '21년도 소요예산 : 1,315,172천원

□ 추진경위

- 2019.1~12월 기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수납
- 2019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결산

□ 2021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,315,172	
자치구 세입계좌 파악	2021.02~2021.02		
학교용지부담금 입금조치	2021.03~2021.03	1,315,172	자치구 입금조치

4 사 업 효 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18년도	○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: 1,044,435천원
2019년도	○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: 636,503천원
2020년도	○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: 747,773천원

향후 기대효과

- 자치구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욕 고취시켜 건설하고 안정적인 세입확보